#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2161**  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## 1. 제안이유

가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,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와 그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여 교육지원청과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며.

나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정(2016. 2. 3.)에 따른 용어변경 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표현 및 띄어 쓰기를 정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등기·등록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하여 명확하고 가결하게 정비함(안 제5조제26호)
- 나.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, 대부 및 변상금징수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·정비함(안 제5조제28호)
- 다. 공유재산의 용도변경·용도폐지와 철거 등에 관한 위임사무를 통합· 정비함(안 제5조제30호)
- 라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·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'학교환경위생 정화'를 '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'로 개정하고,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(안 제1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[별첨 5]

- 1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6조, 제34조, 제35조
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 2)
- 다. 협 의 : 관련부서 협의완료
- 라. 기 타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[별첨 1]
- 입법예고(2017. 9. 1. ~ 9. 21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- 교육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 [별첨 3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 [별첨 4]

#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제26조에 의거"를 "제26조에 따라"로, "권한중"을 "권한 중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13조에 따라"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"6급이하"를 "6급 이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당해"를 "해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3호 중 "초·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"을 "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5조제2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5조제14호 중 "고입중학생"을 "고등학교 입학을 위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6호 중 "학교환경위생 정화"를 "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"로한다.

제5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26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 및 해당 재산의 등기·등록
  - 가. 소관 행정재산,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. 다만, 매입취득,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.
  -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 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 에 포함되는 공유재산

제5조제26호의2를 삭제한다.

- 제5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28.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,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
- 제5조제28호의2부터 제29호의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- 제5조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  - 30.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와 철거. 다만, 토지는 330㎡ 이하의 경우만 해당된다.
- 제5조제30호의2를 삭제한다.
- 제6조제9호의2 중 "9-2"를 "9의2"로 하고, 같은 조 제15호의2 중 "15-2"를 "15의2"로 한다.
- 제7조제13호의2 중 "13-2"를 "13의2"로 한다.

##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26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취득·처분 협의 중인 건부터 적용 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	제1조(목적)			
치에 관한 법률」 <u>제26<b>조에 의거,</b></u> 행	제26조에 따라			
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				
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				
감(이하 "교육감" 이라 한다)과 교				
육지원청 교육장(이하 "교육장"이				
라 한다)의 <u>권한중</u> 일부를 각각 교	<u>권한 중</u>			
육장, 소속 학교장, 직속기관장에게				
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			
한다.				
제2조 ~ 제3조 (생 략)	제2조 ~ 제3조 (현행과 같음)			
제4조(명의표시)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	제4조(명의표시)			
함에 있어서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				
진에 관한 규정」 <u>제13<b>조의 규정에 의</b></u>	제13조에 따라			
<u>하여</u>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				
여야 한다.				
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
1~2. (생 략)	1~2. (현행과 같음)			
3. <u>6급이하</u> 일반직공무원의 시보해	3. <u>6급 이하</u>			
제・대우공무원 선발・관내전보・				
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의원면직·				
사망면직・경징계				
3의2 (생 략)	3의2 (현행과 같음)			
4. <u>당해</u>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	4. <u>해당</u>			
원의 겸직허가(교육장 제외)				

## 개 정 안 혅 했 5. ~ 12. (생략) 5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초 · 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13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65조제2항에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·중등교육시 따른 -----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14.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-----14. 고입중학생 체육특기자 선발(입상 실적조회, 자격심의, 증명서 발급) 15. (생략) 15. (현행과 같음) 16. 제10호 각급학교와 공·사립 고등학교(각종학교 포함). 특수학교의 보건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 -----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------17. ~ 25. (생략) 17. ~ 25. (현행과 같음) 26. 소관 행정재산의 관리(단, 매입 취 26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득은 대장가격 5억원 이하)·사용허가 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해당 및 변상금 징수 재산의 등기・등록 가. 소관 행정재산, 일반재산 및 제27호의 각급학교 행정재산. 다만, 매입취득, 처분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만 해당된다. 나. 가목에도 불구하고 「도시 및

 26-2. 소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

 행정재산의 교환

27. (생략)

27. (현행과 같음)

되는 공유재산

26-2. 〈삭 제〉

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,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

개별법령에 따른 공익사업에 포함

현 행	개 정 안			
28. 제27호 각급학교의 행정 재산의	28.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			
취득(단, 매입 취득은 대장가격 5억	및 대부, 변상금 징수 및 제27호의			
원이하) 및 변상금징수	각급학교 행정재산의 변상금 징수			
28-2. 제27호 각급학교의 대장 가격 5	28-2. 〈삭 제〉			
억 원 이하 행정재산의 교환				
29.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 (단, 매입	<u>29. 〈삭 제〉</u>			
취득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)·대부				
및 변상금 징수				
<u>29-2. 소관 대장가격 5억 원 이하</u>	<u>29-2. 〈삭 제〉</u>			
일반재산의 매각 및 교환				
29-3. 제26호 내지 29-2호까지의 취득·	<u>29-3. 〈삭 제〉</u>			
매각 및 교환 재산의 등기・등록				
30. 소관 행정재산 중 건물의 용도 변경·	30. 소관 공유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			
용도폐지 및 철거	폐지와 철거. 다만, 토지는 330㎡ 이			
	하의 경우만 해당된다.			
30-2. 소관 행정재산 중 330㎡ 이하	<u>30-2. 〈삭 제〉</u>			
<u>토지의 용도 폐지</u> 31. ~ 36. (생략)	31. ~ 36. (현행과 같음)			
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제6조(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		
(생략)	(현행과 같음)			
( 6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1. ~ 9. (현행과 같음)			
1. ~ 9. (공략) 9-2. (생략)	·			
<u>9-2</u> . (항략) 10. ~ 15. (생략)	<u>9의2.</u> (현행과 같음)			
- '	10. ~ 15. (현행과 같음)			
<u>15-2</u> . (생략)	<u>15의2.</u> (현행과 같음)			
16. ~ 18. (생략) 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16. ~ 18. (현행과 같음) 제7조(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		
(생략)	(현행과 같음)			
(경력) 1. ~ 13. (생략)	(원생과 실름) 1. ~ 13. (현행과 같음)			
<b>10.</b> (0 ¬/	1. 10. (E 0-1 E E/			

현 행	개 정 안		
<u>13-2</u> . (생략)	<u>13의2.</u> (현행과 같음)		
14. ~ 15. (생략)	14. ~ 15. (현행과 같음)		

#### 【별첨 2】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

##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와는 해당없음

#### 4. 작성자

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장학사 박성기(02-399-9359)

#### 【별첨 3】부패영향평가

모두가 행복한 확신미래교육



## 서울특별시교육청



수신 행정관리담당관

(경유)
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

- 1. 관련
  - 가, 서울특별시교육청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
  - 나, 부패영향평가 의뢰[행정관리담당관-8847(2017, 9, 12,)]
- 2.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방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, 조직운영, 업무분장,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3. 따라서, 「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는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, 끝,

감사관

**王** 모델

의 전 표 권 단 단 사 무

감사원

시핼 갑사권~11097

( 2017: 9: 15: ) 절수 핵점관리답답관~9091

( 2017. 9. 15. )

우 03178 서울특별시 즐로구 슬립김 48 (신문로2가,서울특별시교육철) / http://www.sen.go.kr

전화 02-6999-149 /전술 02-6999-783

/ keumhyun@sen.go.kr

/ 골개

## 【별첨 4】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

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		
관리번호	2017A서울교육013		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				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	
소관부서	부서명	행정관리담당관				
	담당자명	박성기	전화번호	02-3999-359		
	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					
담당부서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		
	담당자명	이규엽	전화번호	02-399-9307		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17년 09월 12일		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17년 09월 18일					

해당 과제는 분석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7년 09월 18일

#### 관계법규

### 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- 제26조(사무의 위임·위탁 등)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- 제35조(교육장의 분장 사무) 교육장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.
  - 1. 공·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
  - 2.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

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유재산"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- 4. "관리"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·운용과 유지·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- 6. "처분"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, 교환, 양여(讓與), 신탁,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- 7. "사용·수익허가" 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8. "대부계약"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